

# 1.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

## □ 방송통신기자재의 검사·승인용품 사용

| 검사 항목      | 검사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검사 방법                    | 근거   | 결과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방송통신기자재 사용 | 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적합성평가규격에 적합한 제품 | ○ 제품의 육안검사 (필요 시 인증서 요구) | ○ 전파법제58조의2조제1항<br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1조제1항 | 적합 |

## □ 소요회선

| 검사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검사 기준  | 검사 방법          |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결과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주거용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 충족<br>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간</th> <th>회선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 까지</td> <td>단위세대당 1회선(4쌍 꼬임케이블 기준)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</td> </tr> <tr> <td>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</td> <td>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<br/>광섬유케이블 8코아 이상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<br/>단위세대당 1회선(4쌍 꼬임케이블 기준)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           | 구간             | 회선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 까지 | 단위세대당 1회선(4쌍 꼬임케이블 기준)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     |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 |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<br>광섬유케이블 8코아 이상 |  |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<br>단위세대당 1회선(4쌍 꼬임케이블 기준)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      | ○인출구오픈에의한 육안검사 | ○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, [별표4] | 적합    |
| 구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회선수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 까지        | 단위세대당 1회선(4쌍 꼬임케이블 기준)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 |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<br>광섬유케이블 8코아 이상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<br>단위세대당 1회선(4쌍 꼬임케이블 기준)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주거용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 충족<br>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간</th> <th>회선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 까지</td> <td>업무구역(10㎡)당 1회선(4쌍 꼬임케이블 기준)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</td> </tr> <tr> <td>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</td> <td>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<br/>광섬유케이블 8코아 이상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<br/>업무구역(10㎡) 당 1회선(4쌍 꼬임케이블 기준)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간             | 회선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 까지 | 업무구역(10㎡)당 1회선(4쌍 꼬임케이블 기준)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|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 |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<br>광섬유케이블 8코아 이상 |  |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<br>업무구역(10㎡) 당 1회선(4쌍 꼬임케이블 기준)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| ○인출구오픈에의한 육안검사 | ○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, [별표4] | 해당 없음 |
| 구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회선수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 까지        | 업무구역(10㎡)당 1회선(4쌍 꼬임케이블 기준)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 |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<br>광섬유케이블 8코아 이상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<br>업무구역(10㎡) 당 1회선(4쌍 꼬임케이블 기준)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기타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주거용건축물 기준과 업무용건축물 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   | ○인출구오픈에의한 육안검사 | ○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, [별표4] | 해당 없음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
## □ 집중구내통신실 및 층구내통신실

| 검사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검사 기준   | 검사 방법                  | 근거   | 결과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
| 통신실 설치조건<br>공통사항                   | ○ 지상 원칙<br>○ 지하일 경우 침수 및 습기 방지<br>○ 조명시설 및 통신장비용 전원설비 구비  | ○ 육안 검사                | ○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[별표2], [별표3]      | 해당 없음 |
| 주거용건축물<br>(공동주택)                   | ○ 집중구내통신실<br>- 50 ~ 500세대 : 10㎡이상<br>- 500 ~ 1000세대 : 15㎡이상<br>- 1000 ~ 1500세대 : 20㎡이상<br>- 1500세대 ~ : 25㎡이상  | ○ 설계도면 및 출자를 이용한 실측 확인 | ○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호, [별표3]         | 해당 없음 |
| 업무용건축물<br>(6층 이상이고 연면적 5000㎡ 이상)   | ○ 집중구내통신실 : 10.2㎡이상<br>○ 층구내통신실<br>- 층별전용면적 1000㎡ 이상 : 10.2㎡ 이상<br>- 층별전용면적 800㎡ 이상 : 8.4㎡ 이상<br>- 층별전용면적 500㎡ 이상 : 6.6㎡ 이상<br>- 층별전용면적 500㎡ 미만 : 5.4㎡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설계도면 및 출자를 이용한 실측 확인 | ○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호, [별표2]         | 해당 없음 |
| 업무용건축물<br>(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㎡ 미만)  | ○ 집중구내통신실<br>- 500㎡ 이상 : 10.2㎡ 이상<br>- 500㎡ 미만 : 5.4㎡ 이상  | ○ 설계도면 및 출자를 이용한 실측 확인 | ○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호, [별표2]         | 해당 없음 |
| 복합건축물<br>(공동주택 또는 업무용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) | ○ 집중구내통신실 : 용도별 면적확보기준에 따라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<br>○ 층구내통신실 : 업무용건축물 면적 확보기준에 따라 확보<br>○ 집중구내통신실 통합조건 : 연면적 500㎡미만의 업무용 건축물이 복합된 경우로서<br>- 각 용도별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이고<br>-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 | ○ 설계도면 및 출자를 이용한 실측 확인 | ○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호, [별표2] 및 [별표3] | 해당 없음 |

□ 국선인입시설 및 옥내시설

| 검사 항목        | 검사 기준        | 검사 방법  | 근거  | 결과   |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-|--|-------|
| 국선인입         | 지하인입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분계점까지 지하배관 설치</li> <li>○ 기술기준 제26조제2항 관련 별표2의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</li> <li>○ 내부식성금속관 또는 KS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</li> <li>○ 사업자 전주에 설치하는 인입배관의 높이는 지상 20cm 이상 50cm 이하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하인입 여부</li> <li>○ 표준도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</li> <li>○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</li> <li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6조제3항 관련 [별표2의1]의 제2호</li> <li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5항</li> </ul> | 적합    |
|              | 가공인입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에 한함</li> <li>- 단, 사업자는 분계점과 사업자 인입맨홀·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로 인입</li> <li>○ 기술기준 제26조제4항 관련 별표3의 가공인입의 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표준도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제3항 및 제4항</li> <li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6조제4항</li> </ul>   | 해당 없음 |
|              | 맨홀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술기준 제26조제2항 관련 별표2의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에 의한 설치 여부</li> <li>○ 맨홀설치 예외 조건</li> <li>- 인입선로 길이가 246m 미만이고, 인입선로상 분기가 없는 경우</li> <li>-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맨홀설치 여부 (예외 조건인 경우 제외)</li> <li>○ 표준도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6조제2항, [별표2의1]</li> </ul>   | 적합    |
|              | 맨홀, 핸드홀설치 간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46m 이내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줄자 등으로 맨홀 간격 확인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48조제4항</li> </ul>  | 적합    |
|              | 배관 내경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선로의외경(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)의 2배 이상</li> <li>○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</li> <li>- 20세대 이상 : 54mm 이상</li> <li>- 20세대 미만 : 36mm 이상</li> <li>※ 공동주택은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</li> <li>※ 가공인입의 경우 건물 인입부터 국선단자함까지 구간 적용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버니어캘리퍼스 등 측정공구로 내경 측정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7조제1호</li> </ul>  | 적합    |
|              | 배관의 공수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거용 및 기타건축물 : 2공 이상(1공 이상 예비공 포함)</li> <li>○ 업무용건축물 : 3공 이상(2공 이상 예비공 포함)</li> <li>○ 통신구 또는 트레이 : 향후 증설을 고려한 예비공간 확보</li> <li>※ 가공인입의 경우 건물 인입부터 국선단자함까지 구간 적용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육안 검사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7조제2호</li> </ul>  | 적합    |
|              | 배관설치 구간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지경계지점에서 국선단자함까지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설계도 확인 및 육안 검사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7조제2호</li> </ul>  | 적합    |
| 국선수용 및 국선단자함 | 국선수용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선과 구내선의 분계점에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을 설치하여 국선 수용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설치 여부 육안검사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9조제1항</li> </ul>  | 적합    |
|              | 국선 단자함의 구분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광섬유케이블 수용시 :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</li> <li>○ 300회선 미만 동케이블 수용시 :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</li> <li>○ 300회선 이상 동케이블 수용시 : 주배선반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육안으로 설치 확인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9조제2항</li> </ul>  | 적합    |
|              | 국선 단자함 요건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선 수용 단자, 단자반 및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</li> <li>○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</li> <li>○ 단자함의 하부는 바닥으로부터 30cm 이상 높이에 설치</li> <li>○ 실내 설치, 다음 장소 설치 금지</li> <li>- 세면실, 화장실, 보일러실, 발전 기계실</li> <li>- 분진·유해가스 및 부식증기를 접하는 장소</li> <li>- 소화 호수시설을 갖춘 벽장 내</li> <li>○ 별표4의 국선단자함 등의 요건 만족</li> <li>○ 동케이블인 경우 절연저항 50MΩ이상</li> <li>○ 접지단자 설치 여부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선단자함 여유공간 육안 확인</li> <li>○ 국선단자함 설치위치 육안 확인</li> <li>○ 단자함 설치높이 측정</li> <li>○ 설치 금지장소 여부 육안 확인</li> <li>○ 별표4 요건 만족여부 확인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9조제4항 관련 [별표4]</li> <li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제1항</li> </ul>   | 적합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|----------|
| 중간<br>단자함<br>및<br>세대<br>단자함 | 중간<br>단자함<br>설치위치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배관 굴곡기준(기술기준 제28조제5항제4호)에 부적합한 배관의 굴곡점</li> <li>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해 필요한 곳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설계도서 및 현장 등 필수 설치위치 육안검사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0조제1항</li> </ul>   | 적합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대<br>단자함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는 세대단자함 설치</li> <li>세대단자함 설치 예외조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대내 분기가 없는 기숙사</li> <li>세대내 분기가 없는 원룸형 주택(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)</li> </ul> </li> <li>세대단자함의 보호장치 및 전원시설은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</li> <li>별표5의 요건 만족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육안으로 세대단자함 설치 확인(예외조건인 경우 제외)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0조제2항, [별표5]</li> </ul>  | 적합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간<br>단자함<br>요건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</li> <li>중간단자함 설치 위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28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부적합한 배관의 굴곡점</li> <li>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</li> </ul> </li> <li>동케이블인 경우 절연저항 50MΩ이상</li> <li>합체가 금속일 경우 접지단자 설치 여부</li> <li>별표5의 요건 만족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별표5 요건 만족여부 확인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0조제2항 [별표5]</li> </ul>   | 적합       |
| 구<br>내<br>배<br>관<br>등       | 배관공수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: 2공 이상 설치(동등 이상의 내경을 가진 예비공 1공 포함)</li> <li>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시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주장치간 홈네트워크용 배관 1공 이상 설치</li> <li>수평배선계는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구간별 배관공수 육안 확인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제1항</li> <li>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제2항</li> <li>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제3항</li> </ul> | 적합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바닥닥트<br>또는 배<br>관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업무용건축물로 구내선이 7.5m를 넘는 실내 설치</li> <li>성형 또는 망형으로 설치</li> <li>매 구간 교차점 또는 완곡부에 실내접속함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실내접속함 간격 7.5m 이내</li> <li>직선관로로서 선로작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12.5m 이내</li> </ul> </li> <li>접속함 및 인출구는 상면에 돌출 및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배관 및 닥트, 접속함 등 육안 확인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제4항, [별표4]</li> </ul>  | 해당<br>없음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옥내<br>배관의<br>요건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KSC 8454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</li> <li>지하 매설관의 경우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</li> <li>국선단자함과 장치함 별도설치 시 국선단자함과 장치함 구간에 28mm 이상 배관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음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공사진, 자재납품 확인서 확인 또는 육안 확인 등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제5항제1호</li> </ul>  | 적합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관의<br>내경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용되는 케이블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% 이하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육안확인 및 계측기를 이용한 측정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제5항제2호</li> </ul>  | 적합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관의<br>굴곡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(엘보우 등 부가장치 사용 금지)</li> <li>1구간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, 1개소 굴곡각도는 90도 이내, 1구간 굴곡각도 합계는 180도 이내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육안확인 및 계측기를 이용한 측정 또는 설계도서 확인 등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제5항제3호, 제4호</li> </ul>   | 적합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옥내에<br>설치하는<br>닥트 요<br>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충분한 유지보수 공간</li> <li>수직 닥트는 디딤대 설치</li> <li>60cm ~ 150cm 간격의 선로 받침대 설치(배관설치시 예외)</li> <li>닥트 내부에 작업용 조명 또는 콘센트 설치 (바닥닥트 제외)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육안확인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제6항</li> </ul>   | 해당<br>없음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통신선의<br>종류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은 100Mhz 이상의 전송 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, 동축케이블을 사용</li> <li>구내간선케이블은 옥외용 꼬임케이블, 옥외용 광섬유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을 사용. 단, 공동구, 지하주차장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옥내용 케이블을 사용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설치된 케이블의 종류 육안 확인</li> <li>필요시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케이블 성능 관련 자료 확인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2조</li> </ul>  | 적합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거용<br>건축물<br>구내배선<br>기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두 개 이상의 공동주택이 하나의 단지 형성 시 동단자함 설치</li> <li>세대단자함에서 각 인출구 구간은 성형배선으로 구성</li> <li>국선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 링크성능은 100Mhz 이상의 전송특성 (동단자함 설치시 동단자함에서 세대 인출구구간 적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링크성능 기준은 기술기준 [별표6] 참조</li> </ul> </li> <li>홈네트워크설비 설치시 홈네트워크 주장치와 홈네트워크 기기간 꼬임케이블, 신호전송용케이블 등 설치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동단자함 설치 육안 확인</li> <li>세대내 성형배선여부 육안 확인</li> <li>계측기를 이용한 별표6의 링크성능 확인</li> <li>홈네트워크용 통신선 설치 확인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제1항 및 제3항, [별표6], [별표11]</li> </ul>  | 적합       |

|         |   |  |  |   |    |
|---------|---|--|--|---|----|
| 구내선의 배선 | 업무용 및 기타 건축물 구내배선 기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두 개 이상의 공동주택이 하나의 단지 형성 시 동단자함 설치</li> <li>○ 층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 성형배선으로 구성</li> <li>○ 국선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링크성능은 100MHz 이상의 전송특성 (동단자함 설치시 동단자함에서 세대 인출구구간 적용)</li> <li>※ 링크성능 기준은 기술기준 [별표6] 참조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성형배선여부 육안 확인</li> <li>○ 계측기를 이용한 별표6의 링크성능 확인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제2항 및 제3항, [별표6],[별표12]</li> </ul> | 적합 |
|         |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300V 초과 전선과 : 15cm이상</li> <li>○ 300V 이하 전선과 : 6cm이상</li> <li>○ 도시가스관과 접촉금지</li> <li>○ 이격거리 예외조건</li> <li>- 통신선이 케이블이나 광섬유케이블 또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</li> <li>- 전선이 57V(30W)이하 직류전원 전송시</li> <li>- 전선과 통신선간 절연성 격벽설치 또는 별도 배관 수용시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줄자를 이용하여 이격거리 확인</li> <li>○ 도시가스관 접촉여부 확인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3조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| 적합 |
|         | 기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통신용 배관에 방송공동수신설비,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함께 수용시 누화로 인한 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함</li> <li>○ 구내배선에 사용하는 접속자재는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이상 제품 사용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통신 및 방송 이용시 잡음발생 여부 확인</li> <li>○ 각 접속자재의 사양 확인 또는 링크성능 측정결과 기준 만족시 적합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제4항, 제5항</li> </ul>                | 적합 |
| 회선종단장치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거용건축물의 통신용 인출구 : 모듈러잭이나 동축커넥터 또는 광인출구</li> <li>○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 : 각 실별 통신용 인출구 또는 단자함으로 종단</li> <li>○ 통신선로, 방송공동수신설비,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하나의 인출구로 종단시 선로 상호간 누화로 인한 지장이 없도록 함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출구 설치여부 확인</li> <li>○ 통신, 방송 노이즈 발생여부 확인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1조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합  |    |

## 2.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

| 검사 항목   | 검사 기준   | 검사 방법   | 근거  | 결과  |       |
|---------|---|---|---|---|-------|
| 급전선인입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별표7의 표준도에 의한 옥외안테나로부터의 급전선 인입 배관 설치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표준도와 부합되게 시공여부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5조, [별표7]</li> </ul> | 해당 없음   |       |
| 배관 / 덕트 | 설치구간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옥외안테나에서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 까지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설계도 확인 및 육안 검사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없음   |       |
|         | 배관의 종류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KSC 8454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배관의 종류 확인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없음   |       |
|         | 배관의 수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급전선을 수용하는 배관</li> <li>- 3공이상 설치</li> <li>○ 광케이블을 수용하는 배관</li> <li>- 예비공 1공이상 포함 2공이상 설치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설치된 배관의 수 확인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, 제35조, [별표7]</li> </ul> | 해당 없음 |
|         | 배관의 내경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급전선을 수용하는 배관</li> <li>- 배관의 내경 : 36mm 이상 또는 급전선 외경(다조인 경우는 전체의 외경)의 2배</li> <li>○ 광케이블을 수용하는 배관</li> <li>- 배관의 내경 : 22mm 이상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측정공구(버니어캘리퍼스 등)로 측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없음   |       |
| 접속함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배관의 길이가 40m 초과 시 및 배관의 굴곡점에 설치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준공도면 또는 육안 검사를 통해 접속함 설치 여부 확인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6조</li> </ul>        | 해당 없음   |       |
| 접지시설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지저항 10Ω 이하</li> <li>○ 접지단자 설치 위치</li> <li>- 각 층의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지저항 측정</li> <li>○ 준공도면 또는 육안 검사를 통한 접지단자 설치 여부 확인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7조</li> </ul>        | 해당 없음   |       |
| 사용 전원   | 용량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4kW 이상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급용량 확인</li> </ul>   | 해당 없음   |       |
|         | 전압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20V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멀티테스터기로 측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없음   |       |
|         | 전원단자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3개 이상</li> <li>○ 전원단자 설치 위치</li> <li>- 각 층의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육안검사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8조</li> </ul>              | 해당 없음 |

|       |   |  |  |       |
|-------|---|--|--|-------|
| 장소 확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옥외안테나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4㎡ 이상의 면적을 갖는 1개소 이상</li> <li>- 분계점에 가까운 맨홀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광케이블을 통해 신호 전달하는 경우는 예외</li> </ul> </li> <li>○ 중계장치 등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건축물</li> <li>-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0,000㎡ 당 1개소 이상</li> <li>- 규정 별표1의 제2호에 따른 건축물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옥상 : 단지내 1개소 이상</li> <li>· 지하층 :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5,000㎡ 당 1개소 이상</li> </ul> </li> <li>- 각 개소는 분진이나 유해가스로부터 격리된 2㎡이상의 면적(높이 2m이상)</li> </ul> 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표준도, 준공도면, 공간확보의 부합 여부</li> <li>○ 사업자 중계장치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적정 수용 여부 확인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9조제1항, [별표7]</li> </ul> | 해당 없음 |
|-------|---|--|--|-------|

### 3.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

#### □ 방송통신기자재의 검사·승인용품 사용

| 검사 항목      | 검사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검사 방법                    | 근거              | 결과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
| 방송통신기자재 사용 | 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적합성평가규격에 적합한 제품 | ○ 제품의 육안검사 (필요 시 인증서 요구) | ○ 전파법제58조의2조제1항 | 적합 |

#### □ 안전조건

| 검사 항목    | 검사 기준   | 검사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  | 결과 |
|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접지 및 보호기 | <b>접지대상</b>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속으로 된 단자함, 장치함, 지지물, 보호기 등 접지 설치</li> <li>○ 접지 예외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도성이 없는 인장선을 사용하는 광섬유케이블</li> <li>- 금속성 합체이나 광섬유 접속 등 내부에 전기적 접속이 없는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  | ○ 대상설비 접지설치 여부 확인                    | 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제1항 및 제7항 | 적합 |
|          | <b>접지저항</b>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지저항 적정여부 : 통신관련시설 접지저항 10Ω이하</li> <li>○ 다음의 경우는 100Ω 이하 가능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로설비 중 선조, 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 (단, 차폐케이블은 제외)</li> <li>-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</li> <li>-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 단자함</li> <li>-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실드 접지</li> <li>-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</li> <li>- 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포함하는 경우 등 특수 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준 저항값 10Ω을 얻기 곤란한 경우</li> <li>-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 | ○ 측정기를 이용한 접지저항 측정                   | 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제2항       | 적합 |
|          | <b>접지선의 굵기</b>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00Ω 이하 : 1.6mm 이상</li> <li>○ 피복 : PVC 피복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를 갖는 전선</li> </ul>  | ○ 접지선 육안 확인<br>○ 측정공구(버니어캘리퍼스 등)로 측정 | ○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제4항       | 적합 |

#### □ 배관 및 장치함 등

| 검사 항목  | 검사 기준   | 검사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  | 결과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구내 배관  | <b>배관의 종류</b>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속관 또는 통신용 합성수지관</li> </ul>   | ○ 시공사진, 자재납품 확인서 확인 또는 육안 확인 등    | ○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제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합 |
|  | <b>배관의 내경</b>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용되는 케이블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% 이하가 되도록 함</li> </ul>  | ○ 육안확인 및 계측기를 이용한 측정              | ○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합 |
|  | <b>배관의 굴곡</b>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(엘보우 등 부가장치 사용 금지)</li> <li>○ 1구간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, 1개소 굴곡각도는 90도 이내, 1구간 굴곡각도 합계는 180도 이내</li> </ul> | ○ 육안확인 및 계측기를 이용한 측정 또는 설계도서 확인 등 | ○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제3호<br>○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제4호 | 적합 |
|  | <b>배관 설치방법</b>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 배관은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</li> <li>○ 통신용 배관과 공동사용 가능</li> </ul>  | ○ 배관형태 육안 확인                      | ○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<br>○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       | 적합 |
| <b>설치위치</b>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 공동수신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곳</li> <li>○ 케이블의 분배·분기 또는 접속을 위해 필요한 곳</li> </ul> | ○ 설계도서 및 현장 등 필수 설치위치 육안검사  | ○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의2제2항  | 적합   |    |

|       |      |  |  |  |    |
|-------|------|--|--|--|----|
| 설치합   | 설치방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내부에 절연보조장치, 잠금장치 및 통풍구 설치</li> <li>○ 계단이나 복도 등 실내의 공용 부분에 설치</li> <li>○ 증폭기, 분배기, 분기기, 보호기 및 케이블 등 필요한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</li> <li>○ 증폭기·분배기 등 간에 신호 간섭이 없도록 설치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설계도서 및 현장 등 필수 설치위치 육안검사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의2제3항</li> </ul> | 적합 |
| 충장치합  | 설치위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각 세대별 단자함과 접속할 수 있는 곳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설계도서 및 현장 등 필수 설치위치 육안검사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의2제4항</li> </ul> | 적합 |
|       | 설치방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하층에 설치되는 충장치함에는 에프엠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중계기용 무선기기 설치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단말기를 이용한 수신여부 확인</li> </ul>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의2제4항</li> </ul> | 적합 |
| 설치조건등 | 설치조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증폭기와 분배기 등의 장치는 외부에서 교체하기 쉬운 장치함에 설치</li> <li>○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 등은 적당한 길이의 여분 설치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설계도서 및 현장 등 필수 설치위치 육안검사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5항</li> </ul>   | 적합 |
|       | 직렬단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각 세대별 단자함에는 충 장치함으로부터 인입되는 선로에는 출력 단자의 임피던스가 75Ω인 분배기 및 직렬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.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피던스 또는 수신 레벨 측정 등</li> </ul>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의2제5항</li> </ul> | 적합 |

□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

| 검사 항목       | 검사 기준        | 검사 방법   | 근거  | 결과  |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|---|-------|
| 설계조건        | 설계 전 전파조사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신전계강도 등 필요한 전파조사를 수행</li> <li>- 단, 전파방송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를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전파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 경우 예외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파조사 수행결과 자료 검토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</li> </ul>   | 해당 없음 |
|             | 설계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파조사 결과 및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하여 설계</li> <li>○ 방송신호의 손실이 가장 많은 경로에 접속되는 직렬단자에서의 예상 신호세기를 설계도서에 기록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손실이 가장 많은 경로에 접속되는 직렬 단자의 예상신호세기의 별표3 질적수준 만족 여부 확인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9조</li> </ul>   | 해당 없음 |
| 신호의 전송      | 전송방법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방송의 신호를 주파수의 변화없이 그대로 전송</li> <li>- 수신 불량시 방송주파수대역 범위에서 주파수변환전송 가능</li> <li>- 주파수변환 전송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와 간섭이 없어야 함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파수 변경여부 확인</li> <li>○ 주파수를 변경한 경우 직렬단자에 TV 수상기 연결을 통해 타 지상파와 간섭여부 확인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0조</li> </ul>  | 해당 없음 |
| 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| 수신 안테나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상파텔레비전방송,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 신호 수신에 잘 되도록 설계</li> <li>○ 기계적, 화학적 내구성 우수</li> <li>○ 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 접속부는 빗물에 침수되지 않는 구조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질적수준 확인</li> <li>○ 내구성, 방수성 확인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2조</li> </ul>  | 해당 없음 |
|             | 수신 안테나 설치방법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모든 채널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, 에프엠라디오,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및 위성방송 신호 수신</li> <li>○ 한 조의 안테나로 둘 이상의 건축물에서 공동이용 가능</li> <li>○ 낙뢰 보호시설설치 및 피뢰침과 1m 이상 이격</li> <li>○ 안테나지지 구조물은 풍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질적수준 확인</li> <li>○ 피뢰침 설치 및 이격 거리 확인</li> <li>○ 구조물 설계도서 확인</li> </ul>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3조</li> </ul>  | 해당 없음 |
|             | 증폭기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파수대역별로 분리증폭한 후 혼합출력 또는 전대역 증폭</li> <li>○ 증폭기 기준</li> <li>- 수동으로 출력세기 조정 가능</li> <li>- 지상파텔레비전방송, 에프엠라디오,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 방송 방송 균일 증폭</li> <li>-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하거나 차단 가능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증폭기 기능 확인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6조</li> </ul>  | 해당 없음 |
|             | 분배기 및 분기기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분배하거나 분기</li> <li>○ 유희분배단자 및 유희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75Ω 중단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설치된 설비 확인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7조</li> </ul>  | 해당 없음 |
|             | 신호 처리기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[별표2]의 기술기준에 맞게 입력 채널과 출력 채널 변환 가능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[별표2] 기능 확인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8조</li> </ul>  | 해당 없음 |
| 케이블 및 배선    | 구내배선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구내배선은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사용</li> <li>○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 단독배선</li> <li>○ 동일 실내의 경우 직렬단자를 활용하여 분배 또는 분기 가능</li> <li>○ 케이블 상호간 및 설비 접속시 접속기구(커넥터) 사용</li> <li>○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오는 세대단자함 공동 이용 가능</li> <li>○ 통신용 배관 이용시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함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단독배선 및 커넥터 사용 여부 확인</li> <li>○ 통신간섭여부 확인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의2</li> </ul> | 해당 없음 |
| 질적수준        | 안테나 시설의 질적수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공동수신안테나시설의 질적수준은 [별표3]을 따름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질적수준 측정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2조</li> </ul>  | 해당 없음 |

□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

| 검사 항목 | 검사 기준 | 검사 방법 | 근거 | 결과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|----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|----|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|  |   |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--|---|----|
| 설치 범위     | 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범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 경계점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</li> <li>동축케이블은 인입접속점에서 세대단자함까지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설비 설치여부 확인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3조</li> </ul>  | 적합 |
| 사용 설비     | 증폭기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</li> <li>수동으로 증폭기능 조절</li> <li>등화기 또는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 가능</li> <li>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 가능</li> <li>접지단자 구비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능시험 또는 자료를 통한 기능 확인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5조</li> </ul>  | 적합 |
|           | 분배기 및 분기기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임피던스 변화없이 분배하거나 분기</li> <li>유휴분배단자 및 유휴분기단자는 75옴으로 종단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능 확인</li> <li>유휴단자 종단 확인</li> </ul>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6조</li> </ul>  | 적합 |
| 케이블 설치 방법 | 구내배선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구내배선은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사용</li> <li>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 단독배선</li> <li>동일 실내의 경우 직렬단자를 활용하여 분배 또는 분기 가능</li> <li>케이블 상호간 및 설비 접속시 접속기구(커넥터) 사용</li> <li>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오는 세대단자함 공동 이용 가능</li> <li>통신용 배관 이용시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함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단독배선 및 커넥터 사용 여부 확인</li> <li>통신간섭여부 확인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의2</li> </ul> | 적합 |
|           | 인입 접속점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자설비와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접속점은 보호기의 인입 커넥터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입접속점 접속 여부 확인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8조</li> </ul>  | 적합 |

※ 본 내용은 '18.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(구 미래창조과학부)에서 발표한「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 업무처리지침」을 '18. 4월 기준으로 현행화하였음.